

재난 정신건강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KYUNG HEE UNIVERSITY

이 지침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재난 정신건강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재난이란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외상사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러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겪으면서 재난이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왔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구조와 복구와 함께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는 이제 필수적인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재난 정신건강 연구는 향후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근거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필수적이며 장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 피해자를 통한 정보의 습득과 개입에는 특수성을 감안한 연구윤리가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재난 정신건강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위해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그 동안 축적된 재난 정신건강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정보를 통합하여 우리나라에서 타당한 재난 정신건강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재난 정신건강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재난으로 인해 취약한 상태에 놓인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간 대상 연구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 보호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절차와 고려할 점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대상 연구가 아니거나 재난을 경험한 연구참여자를 포함하지 않는 예방적 연구나 문헌 연구 등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연구윤리의 적용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동남아 쓰나미와 동일본대지진 등 재난복구과정에서 윤리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세계적 기준이 마련되려면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가이드라인 역시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2-3차 개정을 통해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2019년 11월

국가트라우마센터/재난 정신건강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팀 연구책임자 백종우

연구진 김혜빈

임정숙

연구원 정주희

윤시연

1 연구의 특수성

- 1.1. 재난 정신건강 연구는 미래에 발생할 재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1.2. 재난 정신건강 연구는 재난지역의 개인 또는 지역사회에 직접적 · 간접적인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1.3. 재난 정신건강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기관 또는 공용)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 1.4. 어떠한 재난 정신건강 연구도 연구 참여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 없기 때문에 재난 연구과정에서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국가 및 지역 사회의 기관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 1.5. 재난 정신건강 연구의 결과는 근거기반 개입 또는 치료전략 개발에 사용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난연구는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에 근거하여 수행 되어야 한다.

2 사전 동의 및 자율성

- 2.1. 재난 정신건강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위해, 재경험 등 위험과 개인 또는 지역사회가 얻을 수 있는 직 · 간접적인 이득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느 시점에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
- 2.2 연구 참여자는 재난 경험 후 경제적 피해, 신체적 손상, 정신건강 문제, 폭력과 외상 사건 경험 등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를 보호하는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2.3 사전 동의 과정에서 해당 연구 참여자의 연령, 거주지역, 국적 등 다양한 특성과 재난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2.4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나 가족 사망, 인지기능 저하, 시설 수용 등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인 재난피해자 및 경험자를 연구 참여자로 할 경우, 동의 및 연구 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지역 사회 참여

- 3.1. 연구자는 해당 지역사회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고, 재난연구 참여집단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에 의해 선발된 지역사회대표와 의사소통을 하도록 권장한다.
- 3.2. 재난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재난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재난연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3.3. 다른 지역이나 국가 등 다른 문화권에 속한 연구자는 재난 상황에서 이해의 부족으로 지역 인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난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인식하고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4 기밀유지와 피드백의 제공

- 4.1.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보장은 필수적이며, 예외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4.2. 연구 참여자가 연구결과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4.3.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적절하게 수집된 정보일지라도 재난피해자, 지역 공동체, 또는 지원서비스 제공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정보라면 연구자는 연구결과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
- 4.4. 연구결과를 제공할 때에는 연구 참여자와 지역사회가 사용하며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5 위험 최소화

- 5.1.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연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 5.2. 연구 참여자의 선발 과정에서 모집의 용이성, 연구비 절감 등의 이유가 아닌 과학적인 근거를 따라 공정하게 선발되어야 한다.
- 5.3. 연구 참여자가 다양하고 반복되는 연구에 노출된 경우 외상 재 경험으로 인한 위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수적이다.

-
- 5.4. 연구 참여자의 인체 유래물을 채취할 경우 관리와 이송에 주의를 요한다.
 - 5.5. 재난 정신건강 연구과정에서 항상 연구 참여자의 정신건강의 위기 발생에 유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 참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신 건강 서비스에 의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프로토콜이 연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5.6. 재난 정신건강 연구는 개별 연구의 특성에 따라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6 연구자 지원

- 6.1. 재난 정신건강 연구 과정에서 윤리적 쟁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검토를 통해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여야 한다.
- 6.2. 재난 정신건강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상의 위험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재난대책본부와의 협력 하에 연구를 진행하도록 권장한다.

재난 정신건강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발 행 일 | 2020년 3월

발 행 인 | 이영문

발 행 처 | 국립정신건강센터

주 소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대표전화 | (02) 2204-0114

팩 스 | (02) 2204-0390

홈페이지 | www.ncmh.go.kr

I S B N | 979-11-90036-62-7

인 쇄 처 | 디자인허브 (T.02-464-0518)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국가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에도 <재난 정신건강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 www.nct.go.kr



문의처 : 국가트라우마센터 연구팀 (02-2204-1445)

비매품/ 무료



9 791190 036627

ISBN 979-11-90036-62-7

본 저작물의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